

제411회 임시회

'23. 9. 8.(금)

검 토 보 고 서

호우 피해 주민 및 사망자·유가족에 대한
충청북도 도세 감면안



정책복지위원회

호우 피해 주민 및 사망자·유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3년 8월 29일
- 회부일자 : 2023년 8월 30일

3. 제안이유

- 호우 피해 관련 주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세를 감면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호우로 인한 사망자가 소유하였던 부동산, 차량 등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**취득세 면제**
- 호우 피해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및 주택 중 호우로 전파, 반파, 침수된 건축물 및 주택에 부과되는 **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면제**
- 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및 주택에 부과되는 **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면제**

5. 검토의견

가. 제출배경

-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충북지역 일대가 특별재난지역*으로 선포된 바, 호우 피해 주민과 사망자·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여 피해 주민과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.

* 청주시, 충주시, 제천시, 괴산군, 단양군, 보은군(회인면), 증평군(증평읍,도안면) 음성군(음성읍,소이면,원남면)

- 이에,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 지원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7월, '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 통보' 및 '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입 지원방안 통보'를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시행하였음.
- 충북도에서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,
 - 호우 피해 사망자 소유였던 부동산,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부과되는 취득세와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본 지방세 감면안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의 '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'에 따른 것으로,

-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, 그 부모,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를 대상으로, 호우 피해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, 차량 등 취득세 감면대상 물건을 상기 감면대상자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당해 취득세를 면제하고,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려는 것임.
- 취득세,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예상액은 다음과 같음.

〈911건 148,581천원 정도〉

❖ 취득세(상속분) : 17건 21,382천원 ※ 사망자 17명(청주시 15, 괴산군 2)

▶ 주택 4건 15,009천원 / 토지 5건 2,447천원 / 자동차 8건 3,926천원

(단위 : 건, 천원)

| 계 | | 청 주 | | 괴 산 | |
|----|--------|-----|--------|-----|-------|
| 건수 | 금액 | 건수 | 금액 | 건수 | 금액 |
| 17 | 21,382 | 10 | 17,813 | 7 | 3,568 |

❖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: 894건 127,199천원

▶ (피해 주민) 주택 401건 4,118천원 / 건축물 479건 122,835천원

(단위 : 건, 천원)

| 계 | | 청 주 | | 충 주 | | 증 평 | | 진 천 | | 괴 산 | | 음 성 | | 단 양 | |
|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|-----|----|-----|-----|
| 건수 | 금액 | 건수 | 금액 | 건수 | 금액 | 건수 | 금액 | 건수 | 금액 | 건수 | 금액 | 건수 | 금액 | 건수 | 금액 |
| 880 | 126,953 | 505 | 113,773 | 11 | 117 | 9 | 15 | 3 | 159 | 336 | 12,539 | 8 | 16 | 8 | 334 |

▶ (사망자·유가족) 청주시 소재 주택 14건 246천원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은 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고

-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은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’란 지진, 풍수해, 벼락, 전화(戰禍)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어,
- 지난 7월 충북지역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 및 사망자·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가능하다고 판단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감면안은 자연재난인 호우 피해 주민 및 사망자·유가족에 대한 도세 감면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,
- 호우 피해 대상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실시하겠다는 취지에서 본 감면안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타당하다고 판단됨